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03651(본소), 2019나2003668(반소) 판결
[질권말소청구 등의 소 · 계약금반환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03651, 2019나20036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583334, 2018가합50751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사모투자전문회사

3. C사모투자전문회사

4. D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최기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이민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583334(본소),

2018가합5075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1 기재 각 은행에게 별지 1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7. 7. 11. 설정된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165,056,959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C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304,052,294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D회사에게 421,329,60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피고에게, 원고 A 주식회사는 2,951,008,810원, 원고 B사모투자전문회사는 381,393,889원, 원고 C사모투자전문회사는 701,764,339원, 원고 D회사는 965,832,96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2,145,8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73,642,150원, 원고 B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165,056,959원, 원고 C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304,052,294원, 원고 D회사에게 421,329,60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 추가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과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면부터 제9면까지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5행의 "기망하였다거나," 다음에 "피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거나,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3행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L 제품이 K 시리즈의 엔진 및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인 R의 V 제품의 엔진 및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이상 피고는 이에 관한 원고들의 기망행위 내지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2조 제(6)항, 제(20)항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 내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취소 내지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도 반소장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 원고 측으로부터 중국 업체인 R을 통해 L 제품의 상용화를 개발·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R을 통해 상용화를 개발·진행할 경우 품질이 저하되거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향후 판매량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안감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피고 직원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였던 P은 제1심에서 'L 제품에 Q 제품과 무관한 엔진이 적용되더라도 피고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5행의 "주기도 하였다." 다음에 "그 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에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실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21면 제9행 이하의 "다)"항을 "라)"항으로 수정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4조 제(1)항의 계약금 몰취 규정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4조 제(1)항의 계약금 몰취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4조 제(1)항은 계약금에 관하여 "이에 따라 양도인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3조 제(1)항은 계약이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은 피고에게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계약금이 귀속되는 것과 별개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보다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있어 위 계약금 몰취 규정을 다투기 어려웠음을 이유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명문으로 합의한 규정을 그 합의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2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계약금 50억 원을 전부 위약벌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4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닌 위약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양수인은 위 금액이 위약벌로서 부당히 과다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감액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민법 제103조), 그렇다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궁박, 경속,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민법 제104조, 피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자문까지 받았다), 계약금 50억 원을 위약벌로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감액하거나 일부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5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F 이륜차사업 부문의 M&A에 관한 법무법인(유한) U의 자문은 2014. 10. 27.부터 이루어졌으나 도중에 협상이 결렬되어 자문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므로, 자문이 재개된 2016. 11. 15.부터 2017. 12. 4.까지의 자문비용 중 2017년의 자문비용에 해당하는 173,642,150원1) 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U이 원고 A에게 보낸 법률자문료 청구서(갑 제42호증)에 '건 명'이 '[1] Project. Motor, [2] F의 인적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 주장의 위 173,642,150원이 전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전제로서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인적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인적분할에 관한 자문비용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부터 F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할 대상사업에 관한 인적분할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2) 현재 F의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인적분할이 이루어져 별도의 법인(W 주식회사)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적분할 관련 자문비용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A 스스로 '구체적인 자문 내역 등은 비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원고 A 주장의 173,642,150원 중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위 890,438,86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 주장의 자문비용과 비교하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여 통상적 인 자문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는 자체적으로3) 피고 및 피고의 모기업 X(현재 상호 : Y,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회계실사와 법무실사 등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원고들 스스로 '구체적인 자문 내역 등은 비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위 890,438,860원 중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고용승계인원을 60명에서 1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후 그 인원이 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해제 통보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고용승계인원의 많고 적음은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제1조)과 고용승계 인원이 특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거래종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제6.1조 제(11)항]을 분명히 하였던 만큼,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고용승계인원이 7명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가 2016. 12. 14. 원고들에게 분할대상사업에 대한 인수를 제안하면서 제출한 제안서(갑 제15호증)에도 고용승계인원을 사전에 선별하여 6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17. 3. 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양해각서(갑 제16호증)에도 '양도인들은 본건 분할 결과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인력이 60명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피고는 고용승계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직원 P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인수하는 F의 설비가운데 핵심설비 몇 개만 피고 공장에 이전·설치하고 나머지 설비 대부분은 매각 내지 폐기하거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피고의 모기업 X의 이륜차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 나아가 위 P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최소 고용승계인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승계인원이 7명이라는 사실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F가 영위하던 분할대상사업을 피고가 양도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데, 고용승계인원이 위와 같이 144명 중 7명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그 체결 목적을 달성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분할대상사업의 고용승계인원에 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8. 5.자 및 2019. 8. 14.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8. 12.자 및 2019. 8. 16.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별지

1)원고 A은 2016. 11. 15.부터 2017. 12. 4.까지의 자문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면서, 다만 계산상의 문제로 2017년의 자문비용만을 손해로 청구한다는 입장이다(원고들 2019. 3. 22.자 준비서면 제8면).

2)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경부터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M&A를 논의해 왔고, 법무법인(유한) U은 이를 자문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인 2016. 4.경에도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인적분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 2018. 4. 25.자 준비서면 제8면 및 2019. 3. 22.자 준비서면 제6면 이하).

3)H는 원고 B 등의 무한책임사원 지위에서가 아니라 H 자체적으로 피고 등에 대한 투자(H는 2017. 5.경 피고에게 F의 이륜차 사업 부분 인수를 제안하면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여부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 2018. 11. 19.자 참고서면).

4)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 2018. 11. 19.자 참고서면 제2면 이하, 2019. 6. 12.자 준비서면 제11면 등).